정 관

2010년 12월 8일

사단법인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연구소의 명칭은 '사단법인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이하 '우리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Forest Contents Lab of Korea'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연구소는 유구한 전통 속에 빛나는 산림문화의 지식정보와 문화콘텐츠들을 연구·보전·개발하여 21세기 새로운 숲 문명의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우리 연구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숲의 지식정보와 전통적 산림문화의 문화원형을 애니메이션, 음악 및 음향, 캐릭터, 게임, 방송 및 영상, 출판 및 만화, 온라인·모바일 등의 산림문화콘텐츠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
2. 산림문화콘텐츠를 이용한 공익적 문화사업의 연구 및 지원 사업
3. 숲해설 등 산림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활동가의 지원 및 교육 사업
4. 기타 우리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

①우리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20번지 4층에 둔다.

②우리 연구소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후원회원, 자료회원 및 단체회원을 준회원으로 한다.

②정회원은 우리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된 기관의 산림과 문화콘텐츠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경력이 있는 자
2. 산림과 문화콘텐츠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우리 연구소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1, 2, 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우리 연구소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1호, 2호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

1.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에서의 의결권
3. 우리 연구소가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우리 연구소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연구 활동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②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의무를 갖는다.

1. 회비의 납부와 정관의 준수
2.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의 유지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우리 연구소를 탈퇴할 수 있으며 서면 혹은 구두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8조 (회원의 상벌)

①회원으로서 우리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우리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우리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2. 회원으로서의 회비납부나 회칙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그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③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견책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①우리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에서 15인(1호를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내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자격과 선출)

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은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총회 의결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우리 연구소 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은 우리 연구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업무를 통리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 이사장직을 대행하며, 연구소의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호 및 나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라. 다호의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연구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총회 연기 등의 부득한 사유로 인해 임원의 임기종료 후에도 임원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선출 때까지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우리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가 있을 때

제 4 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①우리 연구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단, 정회원의 수가 100명을 넘을 때에는 별도규정에 따른 대의원 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3. 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4. 감사가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제15조 (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우리 연구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 (대리인의 참석)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 (총회의 성원과 의결)

①총회는 재적 정회원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출석 정회원이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에 미달될 때에는 출석 정회원만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9 (총회의 제척 사유) 총회의 재적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우리 연구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우리 연구소와 이사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0 (이사회의 구성) 우리 연구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로 구성한다.

제21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의안,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3.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제22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신입회원의 입회승인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우리 연구소 운영의 중요사항

제23조 (의결권의 위임) 이사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 (이사회의 성원과 의결)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결 제척 사유는 정관 제19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 (재산의 구분)

①우리 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제26조 (재산의 관리) 우리 연구소의 재산은 이사장의 감독아래 상임이사가 관리하고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7조 (예산 및 결산)

①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사장은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년 결산안으로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우리 연구소는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29조 (재정) 우리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및 찬조금
3. 풀빛문화연대가 지원하는 후원금, 연구사업 지원금
4. 기타 우리 연구소의 유지보전을 위한 사업

제30조 (임직원의 보수)

① 모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 임원은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임원의 회의, 출장, 연구, 조사 등의 우리 연구소 활동에 따른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③ 직원의 보수지급 기타 임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회계연도) 우리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개정) 우리 연구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1. 우리 연구소의 해산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우리 연구소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하여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연구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34조 (규칙)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우리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5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우리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 관
2. 회원 명부
3. 재산 목록
4. 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
5.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6. 재산 대장 및 부채 대장
7.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 서류
8. 업무일지
9. 주무 관청, 관계 기관과의 공문서

②서류의 보존은 사단법인의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제36조 (사무국과 특별위원회)

①우리 연구소의 연구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또 모든 문서 및 자료

의 기록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편제, 임무, 사무요원의 자격, 근로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우리 연구소는 목적달성과 업무의 효율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 각종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 (후원회) 우리 연구소는 목적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우리 연구소의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에 의한다.

제3조 (임원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임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의 의결에 따르며, 창립년도 재임기간은 차기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소의 창립당시 회원은 가입 절차를 필한 것으로 한다.

2010년 12월 8일

사단법인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